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43 발의연월일: 2024. 8. 8.

발 의 자:서미화・박정현・이연희

안규백 • 이기헌 • 조계원

조 국・허 영・조인철

오세희 • 박해철 • 복기왕

정일영 · 김원이 · 박수현

이병진 • 정준호 • 황정아

김성환 • 박희승 • 박지혜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,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・배제・분리・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지체장애를 이유로 치과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으며, 발달장애인인 한 환자가 부상 첫날에 27군데의 병원에서 진료를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 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진료거부 금지 등) ①・②	제15조(진료거부 금지 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
	자는 장애인 환자에게 이 법
	및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
	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등에서
	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
	를 하여야 한다.